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가. 시설명 :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나. 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다.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F동 2층(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內)

라. 규모 : 294.63㎡ (89.13평)

마. 개관 예정일 : 2020. 10월 중

바. 이용대상(예정) : 7~10세 아동 ※ 시범운영 후 확정

사. 정원(예정) : 36명/1회 ※ 시범운영 후 확정

아. 공간구성

구분	아동 놀이공간	사무실	출입구	수유실	사물함실	창고
면적	254.88㎡	25.56㎡	14.19㎡	16.55㎡	9.8㎡	2.41㎡
비고	실내놀이터 전용공간	용산 공동육아나눔터와 공동사용 (실내놀이터 공간에 합산)		용산 공동육아나눔터와 공동사용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 합산)		

자. 실내놀이터 주요사업

-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20. 9. 21. ~ 2025. 9. 20.)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계약체결일이 연기될 수 있음.

3. 위탁사무

가. 시설 관리 및 운영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나. 프로그램 기획·운영 (2021년부터~)

-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4. 인력구성(안) : 3명 [시설장, 사무원, 안전관리원(생활복지사 겸임)]

직 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8. (이하 생략)
사무원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관리원 (생활복지사 겸임)	실내놀이터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아래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준수

- ※ 아래의 사람은 실내놀이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이 있는 자

5. 위 탁 금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구 분	총 액(원)	비 고
인건비	40,000,000	4개월분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포함
운영비	9,000,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합 계	49,000,000	

- ※ 2020년 위탁금에 사업비 불포함(2021년 이후 사업비 편성 요구 예정)
- ※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기본급,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6. 신청자격

- 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아동복지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아동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② 아동복지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아동학과·아동복지학과·교육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아동 관련 활동(사업)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사 상정 제외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 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된 법인

7. 신청제외대상

-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같은법 제35조(시설의 장),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법인

8. 위탁조건(운영조건)

-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공증함 (공증비용 수탁법인(단체) 자부담)
- 위수탁계약(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함 (보증보험료 수탁법인(단체) 자부담)
- 수탁자는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함

9.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0. 8. 10.(월) ~ 8. 31.(월)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0. 8. 25.(화) ~ 8. 31.(월) <토·일 제외, 09:00~18: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용산구청 5층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종합행정타운)
- 담 당 : 김혜리 주무관(☎02-2199-7013)

라. 제출서류

-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붙임서식)
-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붙임서식) 및 해당 증빙자료 일체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감독청 지도점검 결과 등)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포함)
- ㉣ 법인정관(목적사업에 아동복지 사업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 수탁신청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 기타 수탁자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서류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인(단체) 임직원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실적, 공모사업 참여 실적, 언론보도 등에 대한 증빙서, 법인사업 실적보고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등)

-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 서식 상 최근 3년은 2017년부터 현재 기준임
- ※ 제출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해 합본 총 11부 제출
(원본 1부, 심사용 사본 10부)
-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USB에 저장)
- ※ 심사관련 사업계획 발표(PPT) 자료는 심사 3일 전까지
이메일(hyekim@yongsan.go.kr)로 제출

10. 현장안내

- 가. 일 시 : 2020. 8. 18.(화) 14:00~16:00
- 나. 장 소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F동 2층(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內)
- 나. 내 용 :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공공형 실내놀이터) 현장 및 사업
취지 등 안내
- 다. 유의사항 : 현장안내에 참석할 법인(단체)은 2020. 8. 14.(금) 17:00까지 신청
(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 : ☎02-2199-7013)

11. 수탁자 선정 심사

- 가. 심사일시(예정) : 2020. 9. 4.(금) ※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 나. 심 사 자 :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 다.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신규위탁) 준용 ([붙임] 참조)
- 라.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수탁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 확인 및 평가지표(비공개)에 따라 평가
 - 면접심사 : 법인 대표(또는 시설장 내정자)의 사업계획 발표(PPT(프레젠테이션),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시설장 내정자는 함께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함. 불참할 경우 수탁 포기 처리로 간주함
- ※ 법인 운영 확인 등 필요시 관계공무원 현장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마. 선정방법 :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약 결렬 시
심의회에서 결정한 차순위 법인으로 선정

※ 단, 차순위 법인이 평가점수 70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적격자 심사시 차순위 법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선정결과 : 심의 후 개별통지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바. 향후일정

- 선정 후 세부사항 협의 및 협약 체결
-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 대상
- 신청 법인(단체) 모두 부적격시 수탁법인 재공고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자 모집 : 1차 모집공고에 신청 법인(단체)이 2개소 미달 시 재공고 (2차 모집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미달될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한 선정 심사 진행

- 그 밖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름

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을 경우 수탁자 재모집(공고) 실시

라. 심사 결과에 대해 수탁신청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2-2199-7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

서울특별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신규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1개 항목)	100
가산점 (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7

※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에서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이 있을 수 있음